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

이윤원* 이승태**

The Financial Characteristic Under K-IFRS Reported Beginning in 2009

Lee, Yun-Weon Lee, Seung-Tae

Abstract

Much progress has been made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years follow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Korea reaffirms its commitment to embracing glob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 and improving th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Financial reporting under IFRS will be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statements under IFRS may be reported beginning in 2009. Adoption of K-IFRS is expected to affect financial statement.

The sample of this study is company under K-IFRS may be reported beginning in 2009.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 of K-IFRS adoption on financial items such as assets, liabilities, equity and income.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저자), ywlee@dau.ac.kr

**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교신저자), stlee@donga.ac.kr

I. 서론

1997년말 발생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회계투명성(transparency)의 향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에서부터 회계정보의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회계기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내용을 우리의 회계기준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노력으로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내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FRS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금융당국은 2007년 3월 15일, IFRS 도입 로드맵 발표회에서 IFRS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를 그대로 반영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제정·공표하였다.

학계에서도 IFRS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IFRS의 국내 도입시기를 다루었고(김정국 외, 2004; 오준환 외, 2006) 이후 K-IFRS를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K-IFRS의 도입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여 대비책을 촉구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김문철 등, 2006; Ball, 2006; 김문철과 이준규, 2008). 최근에는 K-IFRS와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의 차별성을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봉희, 2006; 신현걸, 2008; 강선민 등, 2009 등). 국외의 연구가 IFRS와 회계의 질을 연관시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Van tendeloo and Vanstraelen, 2005; Barth et al., 2006; Gassen and Sellhorn, 2006; Hung and Subramanyam, 2007; Barth et al., 2008).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조기도입한 우리나라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와 주석을 분석하여 K-IFRS 도입 이후 변화된 재무적 특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2011년 전격 시행을 앞두고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실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품질의 효과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일련의 회계제도의 개선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K-IFRS의 의의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K-GAAP와 K-IFRS의 회계처리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4장에서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맺는다.

II. K-IFRS의 의의

1. K-IFRS의 도입배경

금융당국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K-IFRS의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과거 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¹⁾. 금융감독원은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수정 촉구(최후의 읍소)”라는 보도자료²⁾를 통해 2006 사업연도 결산시점('07.1월~3월)을 앞두고 상장법인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2006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모두 수정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금융당국은 2006년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기업들도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과거 분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읍소하였다. 금융당국은 이후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2007년 3월말로 종료되고 과거 분식 자진정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K-IFRS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였다.

“특히 금번 로드맵은 과거분식 자진정리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 노력을 마무리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2007.3.15,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K-IFRS의 도입은 과거분식 자진정리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1) K-IFRS는 법적 권위있는 기관이 공식적인 정규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

2)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수정 촉구(최후의 읍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12.20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 노력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구비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³⁾.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 3월 15일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행사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의의를 밝혔다.

-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② 그 동안 회계선진화를 위해 실시한 각종 제도개선, 감독강화, 과거분식 자진수정 유도 정책 등 노력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
- ③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회계적으로 세계 공통언어인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되어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회계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앞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공시체계 전환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실질에 맞게 파악이 가능하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정보의 국제 정합성이 제고된다.
- ⑤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가능하다.
- ⑥ 외국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하고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진다⁴⁾.

3) K-IFRS의 기업회계기준전문 문단 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4) 2007년 현재 국내기업의 외국상장 현황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⁵⁾ 대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라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IFRS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K-IFRS의 진행상황

1998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IFRS에 합치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1999년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IFRS의 주요내용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왔다⁶⁾. 2007년 3월까지 국제회계기준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23개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실질내용상 IFRS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FRS를 일괄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시 장	기 업
NYSE (8)	포스코,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KT,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LG필립스LCD, 한국전력
NASDAQ(7)	미래산업, 그라비티, 인터파크지마켓, 와이더덴, 웹젠, 픽셀플러스, 하나로텔레콤
룩셈부르크(13)	케이티엔지, 현대제철,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삼성SDI, 한국씨티은행,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은행, 현대자동차, 한솔제지, 케이씨씨
런던(12)	하나투어, 현대자동차, KT, 금호타이어, LG화학, LG전자, 롯데쇼핑,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자,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텔레콤

- 5)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 6) 1973년 6월 영국에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 9개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참여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IASC는 IAS 1(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를 시작으로 IAS 41(Agriculture)까지 발표하였다.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재무보고기준)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이 2003년부터 확대 적용된 것이다. IFRS는 전세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과 회계적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기준서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해석서를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IFRS는 기준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IAS 30개, IFRS 8개, 해석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SIC Interpretation 11개, IFRIC Interpretation 11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것과 수용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반영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우리의 기준이 IFRS와 여전히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는 IFRS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2월 관계부처,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을 발족하고 실무진 회의와 전체 준비단회의를 거쳐 IFRS 도입 로드맵(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6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IFRS 도입 로드맵을 2007년 3월 15일에 발표하였다. 2007년 9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IFRS 관련 저작권 계약을 하였고, 2007년 12월에 비로서 K-IFRS를 제정·공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사례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K-IFRS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K-IFRS 도입과 관련된 추진 일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K-IFRS 도입과 관련된 추진 일정

연 도	추진 업무	완료시점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2월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단 구성 및 회의개최(2회)	5월,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저작권 계약	9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공표	12월
2008년	IFRS 국제자문단 구성·운영	1월
	회계선진화 추진 기획단 구성·운영	4월~6월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 구축·운영	5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기준 마련	7월
	국제회계기준 심포지엄 개최	8월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구성·운영	9월
	K-IFRS 적용지침 번역, 발표	12월
	EC의 IFRS 동등성 인증 확보	12월
2009년	기업에 대한 IFRS Survey 실시	1월, 6월
	자본시장법, 외감법 및 외감법시행령 개정	1~2월
	IFRS 관련 기업공시서식 개정	2월
	IASB 위원 초청 세미나 개최	4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6월
	회계법인에 대한 IFRS Survey 실시	6월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IFRS 사전공시사항 점검	5, 8월
	외감법 시행령 2차 개정	3분기
	IFRS 조기적용기업의 도입사례 관련 세미나 개최	4분기
	IFRS에 대한 질의회신제도 운영	4분기
	‘IFRS 이해와 도입준비’ 홍보책자 발간	4분기
	기업에 대한 IFRS Survey 실시(2회차)	4분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4분기
	IFRS 조기도입 자문 T/F 운영	연중
	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	중·장기 추진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의 회계감독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장기 추진
	상장/공시 규정 및 금융회사 감독규정 개정	중·장기 추진

<출처: IFRS도입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 감독방향, 2009.9, 금융감독원>

한편, K-IFRS는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거나 추후 제정되게 될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희망기업에 한해 2009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IFRS 도입 시 투자자 보호 및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IFRS 적용 1년 전 차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에 IFRS를 조기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전전기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은 제외)도 공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9년에 IFRS를 조기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IFRS 전환일”은 2008년 1월 1일이 되며 2009년 최초 공시시점에 2008년 초의 재무상태표, 2008년의 재무제표, 2009년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⁷⁾.

<그림 1> 우리나라의 K-IFRS 도입일정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현행 회계기준	K-IFRS	K-IFRS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출처: IFRS도입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 감독방향, 2009.9, 금융감독원>

7)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IFRS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2011년의 재무제표이지만 전기의 재무제표가 비교공시되어야 하므로, 최초 공시 시점에서는 전전기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은 제외)도 공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1년에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IFRS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 되며 2011년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2010년초 재무상태표, 2010년의 재무제표, 2011년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

Ⅲ. K-GAAP와 K-IFRS의 회계처리방법 및 구조의 차이 분석

1. K-GAAP와 K-IFRS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IFRS는 기존의 GAAP와는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각 계정과목에 대해 회계방법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 회계처리방법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재량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마다 상이한 회계처리문제로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K-GAAP와 K-IFRS의 회계처리방법과 절차, 그리고 재무보고방법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K-GAAP와 K-IFRS간의 주요 차이점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현행 지분율 30%이상 최대주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에서 지분율 50%이상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 ②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과거 수요자금융계약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제거시점으로 현행 K-GAAP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이나 K-IFRS에 따르면 원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다.
- ③ 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과 대손(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은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K-IFRS는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해야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나 K-IFRS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다.
- ④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현행 K-GAAP는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되나 K-IFRS는 과거 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원가법)하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재평가모형)할 수 있다. 이때, 전환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자산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 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검토(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다. K-IFRS는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변경되는 경우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로 재무제표 작성 노력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하므로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인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노력과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다.
- ⑥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기존에는 임대수익 목적의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으나, K-IFRS에 따르면 임대 및 시세차익 목적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는 보유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원가(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를 선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⑦ 회원가입권과 보증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존에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던 회원가입권과 보증금을 시설이용권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시설이용료는 선급비용으로 계정 분류한다.
- ⑧ 아파트 등 예약매출: 현행 K-GAAP에 따르면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나, K-IFRS에서는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⑨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현행 기준에 따라 지분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K-IFRS에 따라 종속기업투자로 계정재분류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⑩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나 K-IFRS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해야 한다. ‘미래임금상승

를'과 '할인율'의 차이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측정되는데, 미래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감소할 수 있다.

- ⑪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완화 및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의 표시와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K-GAAP에 따르면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80%)하여, 미래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는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50%)로 완화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GAAP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유동성/비유동성으로 구분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K-IFRS는 모두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 ⑫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금액, 이자의 지급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행 K-GAAP에 따르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K-IFRS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여 기업의 판단에 따라 현금흐름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⑬ 당좌차월(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존의 기준은 당좌차월에 대해 규정이 없어서 모든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보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K-IFRS는 당좌차월 중 금융회사의 요구에 의한 수시상환 조건의 당좌차월에 한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토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K-GAAP와 K-IFRS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K-GAAP와 K-IFRS의 차이점 비교

항목	K-GAAP	K-IFRS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지분율 30%이상 최대주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지분율 50%이상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과거 수요자금융계약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제거시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	원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	공정가치로 측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원가모형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선택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검토	재검토 없음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 및 기간을 재검토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회원가입권과 보증금의 계정재분류	기타비유동자산	시설이용권대가: 무형자산 시설이용료: 선급비용
아파트 등 예약매출의 수익인식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인식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원가법)
임직원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급여채무
대손충당금 설정	세법과 회계관행에 따라 설정	수취채권 손상검토시 개별적으로 발생여부를 검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유동항목	비유동성항목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금액, 이자의 지급금액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자율공시
당좌차월	재무활동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2. K-GAAP와 K-IFRS의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조의 차이

K-IFRS의 도입은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행 GAAP의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주식사항이 된다⁸⁾. K-GAAP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K-IFRS는 재무상태표의 경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K-GAAP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배열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배열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 구분내의 각 자산, 부채의 항목별 배열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기존의 표시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와 K-GAAP에 근거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예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K-IFRS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경우 기존의 K-GAAP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에 유동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구분 표시하던 것이 K-IFRS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8) K-IFRS를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재무상태표'의 명칭이 재무상태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표 3> K-GAAP를 적용한 대차대조표와 K-IFRS를 적용한 재무상태표의 예시

대 차 대 조 표
제×(당)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제×(전)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 (단위 : 원)

과 목	제 × (당) 기	제 ×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xxx	xxx
(1) 당좌자산	xxx	xxx
1.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2. 단기금융상품	xxx	xxx
3. 매출채권	xxx	xxx
대손충당금	(-)xxx	(-)xxx
(2) 재고자산	xxx	xxx
II. 고정자산	xxx	xxx
(1) 투자자산	xxx	xxx
1. 장기금융상품	xxx	xxx
(2) 유형자산	xxx	xxx
1. 건물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자 산 총 계	xxx	xxx
부 채		
I. 유동부채	xxx	xxx
1. 매입채무	xxx	xxx
II. 고정부채	xxx	xxx
1. 퇴직급여충당금	xxx	xxx
국민연금전환금	(-)xxx	(-)xxx
퇴직보험예치금	(-)xxx	(-)xxx
부 채 총 계	xxx	xxx
자 본		
I. 자본금	xxx	xxx
1. 보통주자본금	xxx	xxx
II. 자본잉여금	xxx	xxx
III. 이익잉여금	xxx	xxx
1. 처분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당기 : xx원 전기 : xx원)	xxx	xxx
IV. 자본조정	(-)xxx	(-)xxx
1. 자기주식	(-)xxx	(-)xxx
자 본 총 계	xxx	xxx
부 채 와 자 본 총 계	xxx	xxx

재 무 상 태 표
제×(당)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제×(전)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자 산		
I. 유동자산	xxx	xxx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xxx
3.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xxx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xxx	xxx
5. 재고자산	xxx	xxx
6. 기타유동자산	xxx	xxx
II. 비유동자산	xxx	xxx
1.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xxx	xxx
2. 유형자산	xxx	xxx
3. 무형자산	xxx	xxx
4. 기타비유동자산	xxx	
자산총계	xxx	xxx
부 채		
I. 유동부채	xxx	xxx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xxx	xxx
2. 당기법인세부채	xxx	xxx
3. 기타유동부채	xxx	xxx
II. 비유동부채	xxx	xxx
1. 퇴직급여채무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 본		
1. 자본금	xxx	xxx
2. 자본잉여금	xxx	xxx
3. 자기주식	xxx	xxx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xxx
5. 이익잉여금	xxx	xxx
자본총계	xxx	xxx
자 본 및 부 채 총 계	xxx	xxx

한편, K-IFRS에 따르면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첫째, 하나의 보고서: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모두 표시한 단일포괄손익계산서

둘째, 두 개의 보고서: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명칭이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세후 또는 세전 금액으로 선택 표시 가능하다.

K-IFRS는 손익계산서의 경우 어떠한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 필요한 계정 과목만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재무제표는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순서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틀을 따랐지만 IFRS는 매출액과 금융비용, 지분법 손익, 법인세 비용, 순이익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기업의 선택에 의해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인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K-IFRS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와 K-GAAP에 근거한 손익계산서를 비교예시하면 <표 4>와 같다.

K-IFRS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까지는 K-GAAP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구분하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구분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보고 이후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총포괄손익을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4> K-GAAP를 적용한 손익계산서와 K-IFRS를 적용한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시

손익계산서

제×(당)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전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I. 매출액	×××	×××
1. 제품매출액	×××	×××
II. 매출원가	×××	×××
1. 기초제품재고액	×××	×××
2. 당기제품제조원가	×××	×××
계	×××	×××
3. 기말제품재고액	(-)×××	(-)×××
III. 매출총이익	×××	×××
IV. 판매비와관리비	×××	×××
1. 급여	×××	×××
2. 퇴직급여	×××	×××
3. 복리후생비	×××	×××
4. 여비교통비	×××	×××
5. 감가상각비	×××	×××
V. 영업이익	×××	×××
VI. 영업외수익	×××	×××
1. 이자수익	×××	×××
2. 유형자산처분이익	×××	×××
VII. 영업외비용	×××	×××
1. 이자비용	×××	×××
VIII. 경상이익	×××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X. 법인세비용	×××	×××
X 1. 당기순이익	×××	×××
(주당경상이익:당기 ××원 전기 ××원)		
(주당순이익 :당기 ××원 전기 ××원)		

포괄손익계산서

제×(당)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전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I. 매출액	×××	×××
1. 제품매출액	×××	×××
II. 매출원가	×××	×××
1. 기초제품재고액	×××	×××
2. 당기제품제조원가	×××	×××
계	×××	×××
3. 기말제품재고액	×××	×××
III. 매출총이익	×××	×××
IV. 판매비와 관리비	×××	×××
1. 급여	×××	×××
2. 퇴직급여	×××	×××
3. 복리후생비	×××	×××
4. 감가상각비	×××	×××
5.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	×××
V. 영업이익	×××	×××
VI. 기 타	×××	×××
1. 금융수익	×××	×××
2. 기타수익	×××	×××
3. 금융비용	×××	×××
4. 기타비용	×××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VIII. 법인세비용	×××	×××
IX. 당기순이익	×××	×××
X. 기타포괄이익(손실)	×××	×××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
2. 기타포괄이익의 법인세효과	×××	×××
XI. 총포괄이익	×××	×××
XII. 주 당 손 익		
기본주당순이익	×××	×××

IV.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 분석

1. 표본

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IFRS를 실제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와 주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기업의 선택에 따라(금융업 제외) 2009년부터 K-IFRS를 조기도입할 수 있다⁹⁾. 2009년 현재 2009년부터 K-IFRS를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케이티앤지(KT&G), STX 펜오션, 풀무원, 풀무원홀딩스, 이견산업, 지코엔루티즈, 코스모화학, 영진약품공업, 한국큐빅, 다스텍, 디스플레이테크, 인션이엔티, 에코에너지홀딩스, 국제엘렉트릭 등 모두 14개사이다¹⁰⁾. 2009년에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 중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업은 풀무원, 에코에너지홀딩스, 국제엘렉트릭을 제외한 총 11개사이다. 풀무원의 경우 K-IFRS를 도입하고 있으나 2009년 4월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됨에 따라 분석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다. 에코에너지홀딩스도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K-IFRS를 조기도입하고 있으나 2008년 6월 1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토탈이엔에스(주)를 흡수합병하였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분석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다. 국제엘렉트릭은 3월말을 결산일로 하기 때문에 동일 결산일(12월)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위해 분석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다.

9) 오는 2011년으로 예고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계작성 방식이 제조업체들과 다른 조선·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조선협회는 조만간 정부에 IFRS 의무도입 시기 연장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고, 건설업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09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내용 중 일부).

10) 2010년부터 K-IFRS를 조기도입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텔레콤 등 27개사이다.

2.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재무적 특성

분석대상 11개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에 속하는 기업은 6개사, 코스닥시장에 속하는 기업은 5개사이다.¹¹⁾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분에 관계없이 고루 조기적용한 점은 특이하다. 코스닥 기업 역시 K-IFRS의 조기도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의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주석에 나타난 재무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GAAP(기준서 제25호)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는 최상위지배회사이다. 그러나 K-IFRS에 따르면 지배회사가 모든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조기도입한 유가증권상장기업 6개기업 중 4개사가, 코스닥상장기업 5개기업 중 2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¹³⁾.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K-GAAP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비유동성으로 구분하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하여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배열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K-IFRS는 유동성배열법이 더욱 신뢰성 있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본문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Current/Non-current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Presentation based on liquidity (유동성배열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대차대조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K-GAAP에 따라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해오던 자산 부채의 표시방법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없

11) 2007년 12월부터 IFRS를 조기 도입기로 내부 결정을 한 인선이엔티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2009년 1·4분기부터 K-IFRS를 적용한 분기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IFRS를 조기에 도입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K-IFRS 조기 도입의 성공요인으로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도입 의지, 실무 담당자를 위한 꾸준한 교육, 참여 회계법인들의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파이낸셜뉴스, 2009.10.11 기사 내용 중 일부)

12) 다스텍은 지난 17일 국제회계기준(K-IFRS)조기도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를 증대하겠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IFRS전담팀을 구성해 기존회계정책의 차이분석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회계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다스텍은 해외에 4개의 자회사가 있어 분기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기업의 내재가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절한 경영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http://www.dastek.co.kr>, 2009.2.25)

13)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IFRS가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 실체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기타 정보 수요 때문에 계속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해야 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분·반기에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대차대조표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비유동을 구분한 후에는 그 유동성 자산부채항목과 비유동성 자산부채항목의 배열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경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순으로 배열한 기업이 11개기업 중 8개기업(72%)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와 관련하여 K-GAAP는 손익계산서를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K-IFRS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되, 중단영업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영업손익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성과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이 영업손익의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조기도입한 11개의 기업 중 3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손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가 영업손익의 공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손익 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업손익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K-IFRS의 도입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이다¹⁵⁾. K-GAAP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평가시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되나 K-IFRS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가모형에 비하여 순자산이 과대/과소계상될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개기업 중 6개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유가증권시장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코스닥상장 5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14) K-IFRS는 어떠한 정형화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상이한 포괄손익계산서가 등장할 수 있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15) GS칼텍스 대한항공 (주)효성 등 대기업들이 건물,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유형자산 재평가'에 잇달아 나서면서 대규모 평가차익과 부채비율 하락이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알부자' 기업들의 실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자산재평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악화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자산재평가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회계기준(IFRS)을 올해부터 조기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2009년 0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 중 일부).

<표 5>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재무적 특성 분석 결과

기업명	소속시장	전환일	연결 여부	연결 기업수	유동 /비유동	영업손익표 시여부	재평가여부 (공정가치평가)
케이티엔지	유가증권	2008.1.1	○	9(6)	비유동	○	토지일부
STX팬오션	유가증권	2008.1.1	○	13(4)	비유동	○	토지,건물,구축 물,기계장치
풀무원홀딩스	유가증권	2008.1.1	○	21(14)	유동	○	토지,건물
이진산업	유가증권	2008.1.1	○	5(2)	비유동	×	토지,생물자산
코스모화학	유가증권	2008.1.1	×	·	유동	○	×
영진약품공업	유가증권	2008.1.1	×	·	비유동	○	토지
인선이엔티	코스닥	2008.1.1	○	4(1)	비유동	정상영업이익	토지
디스플레이테크	코스닥	2008.1.1	×	·	비유동	×	×
다스텍	코스닥	2008.1.1	○	4(1)	비유동	정상영업이익	×
한국큐빅	코스닥	2008.1.1	×	·	유동	○	×
지코엔루티즈	코스닥	2008.1.1	×	·	비유동	×	×

주:1) K-IFRS 도입이후 연결자회사 수를 말하며, ()안의 숫자는 K-GAAP을 적용했을 때의 연결자회사 수를 말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K-GAAP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또한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또한 없다. 그러나 K-IFRS는 감가상각방법은 물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모두 적어도 매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 6개기업 중 5개사가, 코스닥상장 5개사 중 1개사가 감가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의 변경을 하였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K-GAAP는 원가모형만 허용하는 반면, K-IFRS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과는 달리 조기도입한 기업 모두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불문하고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K-GAAP에 따르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이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되었으나, K-IFRS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됨으로써 과거에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

던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에 대해서, K-IFRS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기업은 조기도입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5개사이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finite)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을 위하여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보다 나아가 당해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관련요소(예를 들어, 법적, 규정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또는 기타요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순현금유입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foreseeable limit)’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이라고 본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예로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들 수 있다. 조기도입기업 중 K-GAAP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에 대해서, K-IFRS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기업은 유가증권 상장시장 6개기업 중 5개사이나 코스닥상장기업은 없었다. 대부분의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재분류함으로써 무형자산의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K-GAAP 하에서는 청산가치개념을 채택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K-IFRS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인 미래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차이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측정되는 퇴직급여채무가 현행퇴직급여충당금보다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다. 즉, 미래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뀔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변동하고 그 결과 손익(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한다. 조사대상기업 중 2년 연속 퇴직급여채무가 증가한 기업은 4개기업이고, 감소한 기업은 4개기업이다. 3개기업은 증가, 감소가 연도마다 상이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채택하여 확정급여채무를 계상하고 있다.

<표 5>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재무적 특성 분석 결과(계속)

기업명	무형자산 간주원가	감가상각방법 등의 변경	회원가입권.보증금의 계정재분류	확정급여채무
케이티엔지	원가법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STX팬오션	원가법	잔존가치	○	해상직원-확정급여형 육상직원-확정기여형
풀무원홀딩스	원가법	감가상각방법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이건산업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코스모화학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영진약품공업	원가법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인선이엔티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디스플레이테크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다스텍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한국큐빅	원가법	×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지코엔루티즈	원가법	감가상각방법	×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채택

V. 요약 및 결론

오는 2011년 K-IFRS의 의무적용대상 기업은 모두 1900개이다. 각 기업들은 의무적용을 앞두고 기업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2010년의 재무제표를 함께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K-IFRS의 적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2009년에 K-IFRS를 조기에 적용한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분석하여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회계처리방식과 재무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K-GAAP와 K-IFRS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K-IFRS를 조기도입한 1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와 주석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IFRS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 실제 IFRS를 도입한 기업을 표본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도입 11개 기업 중 6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둘째,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조기도입 11개 기업 중 8개사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순으로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8개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조기도입 11개 기업 중 6개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넷째, 조기도입 11개 기업 중 6개사가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다섯째, 무형자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무형자산을 새로 계상한 기업은 조기도입 11개 기업 중 5개사이고, 조기도입한 모든 기업들은 무형자산을 원가법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확정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IFR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조기에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정된 표본기업 수와 K-IFRS의 특성상 기업마다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을 계량화하여 K-IFRS의 도입을 전후로 한 양적 질적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동이 회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선민, 한봉희, 황인태(2009),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18, 281-312.
- 금융감독원,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수정 촉구(최후의 읍소), 2006.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2007.
- 금융감독원, IFRS도입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 감독방향, 2009.
- 김문철.안영균.정혜영(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 165-194.
- 김문철.이준규(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9 , 155-185.
- 김정국.문점식.서정우(2004), “회계기준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회계저널, 13, 87-118.
- 오준환.김호중.김성남(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수준대상 및 시가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5, 31-58.
- 다스텍, 기업공시사항, <http://www.dastek.co.kr>, 2009.2.25.
- 동아일보, 신문기사내용, 2009.3.23.
- 신현걸(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 1109-1136.
- 파이낸셜뉴스, 신문기사내용, 2009.10.11.
- 한국경제신문, 신문기사내용, 2009.7.7.
- 한봉희(2006),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구개발지출의 회계처리기준변경에 대한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31, 97-126.
- Ball, R. (2006),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5-27.
- Barth, M. E., W. R. Landsman, M. H. Lang and C. D. Williams (2006). Accounting qualit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US GAAP, SSRN.
- Barth, M. E., W. R. Landsman and M. H.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forthcom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Gassen, J. and T. Sellhorn (2006). "Applying IFRS in Germany -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und Praxis* 58(4).
- Hung, M. and K. Subramanyam (2007).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2(4): 623-657.
- Van tendeloo, B. and A. Vanstraelen (2005).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IFRS."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1): 155-180.